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25. 10.

발의자 : 신정훈 의원

찬성자 : 인

### 제안이유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사회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진정함으로써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2005년 제정 이후 주로 인프라 확충 부분에 중점을 두며 변화된 사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포괄하기 어렵고, 센터의 운영 또한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아울러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로 공익을 위해 활동함에도 법적·재정적 위험을 자원봉사자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자원봉사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원봉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위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가. 자원봉사 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개정함(안 제명).
- 나. 자원봉사자의 범위에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주체를 시민으로 개정하고 급속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 제7조).
- 다. 광역시·도 단위 자원봉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협행법에 명시하여 시·도별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부여(안 제9조 제1항).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마련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 마.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손해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손해배상청구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자원봉사활동 과정 중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배상책임을 각 자원봉사단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자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제5항 신설).
- 바. 자원봉사 관리 직무 범위의 확대에 따라 관계 행정부처가 국가직무

능력표준이 개발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현행법에 포섭  
(안 제15조).

사.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관리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 채용, 포상 등 처우를 보장하여 검증된 전문인력이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기반 마련(안 제15조의 2 신설).

아.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을 초래하는 바, 자원봉사센터의 직접적·공적 역할과 재원의 한정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운영 목적에 따른 무상대여·사용 근거 마련(안 제16조).

자.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 민간주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예외 사항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을 지양하고 점진적으로 민간 운영형태로 전환을 모색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자원봉사활동 진흥기관으로서 자원봉사센터의 법적인 지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각 행정 지역명의 자원봉사센터로 함(안 제19조의2 신설).

카. 자원봉사센터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 (안 제19조의4 신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자원봉사기본법(약칭: 자원봉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시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인종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제5조의2(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은 영리적 활동, 정파적 활동, 종파적 활동 등을 제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 · 조정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2.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의 자원봉사에 관한 추진 시책
4.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자

원봉사관리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 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 ②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입은 신체적·재산적 손해에 대해 필요한 지원 및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을 면제받은 자원봉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자원봉사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교육 훈련 및 위험 예방, 인정과 홍보, 재난 자원봉사 등 자원봉사활동의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자원봉사 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관리 전문인력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 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센터장을 포함한 자원봉사 관리 전문인력을 두고, 채용  
· 직무 ·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자원봉사센터의 명칭) ① 전국 단위 자원봉사센터는 한국중  
앙자원봉사센터로 하고, 지역 단위 자원봉사센터는 해당 지역명의  
자원봉사센터로 명칭한다.

② 행정 지역명이 들어간 동일 명칭을 같은 목적으로 중복하여 사  
용할 수 없도록 한다.

제19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① 자원봉사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사  
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  
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  
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을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위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별칙)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에 따른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

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